

## 일반소식

# 해수부 - 어촌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어촌관광 기반 조성에 집중 투자

**현** 행 어촌·어항 개발 예산 1,500여억 원 중 850억이 어촌관광 중심의 복합공간 창출에 집중 투자되는 등 정부의 어촌 지원 방향이 생산 기반 위주에서 관광기반 중심으로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내외적 여건악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어촌 경제를 살리고 국민 레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촌 관광 사업을 적극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어업인 중심의 어촌관광 활성화로 실질적 어촌소득 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되는 어촌어항법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다기능 종합어항 등 관광중심의 어촌·어항 통합 개발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개발 모델에 따라 차별화된 투자방안을 강구, 어촌·어항 복합 모델은 기존 사업비를 전면 재편하여 집중투자하

고 어항자체만을 개발하는 모델은 기존 어항사업비의 우선순위를 재편하여 잠재력이 높은 어항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또 어촌자체 만의 개발 모델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기로 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은 어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복합도시형 관광, 어촌정주권형, 지역특화형으로 구분, 별도의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해역별로도 낚시, 해수욕, 생태체험 등 각 해역의 특색에 따른 다양한 관광유형의 개발로 해역의 독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인이 직접 주도하는 어촌관광을 실현, 실질적인 어촌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어업인이 스스로 어촌관광을 경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본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어항공사 준공기간 단축

완공을 앞둔 예비준공 검사대상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는 실 준공예정일로부터 75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고 준공 2개월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검사업무 규정개정안(훈령)을 고시하고 앞으로 준공예정 공사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공사에 대해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시행하는 예비준공검사 시기가 현행 1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로 개정했다.

예비준공 검사시기의 단축에 따라 본 준공검사의 차질을 막기 위한 공사감독관의 예비준공검사 요청시기(기준45일이전)도 실 준공예정일로부터 75일 이전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검사업무 관할기관장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토록 규정했다.

## 어촌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높이기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오는 2007년까지 두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이날 한강 선유도 물의 공원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보전하는 것을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정착,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등을 통해 한강 등 4대강 수질의 지속적 개선을 모색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지 상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하수 처리기술과 물절약 및 재이용 기술, 친수공간 조성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해대응 시스템 정비,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문의 02-3673-2854**

## 해수부, 어항공사 품질관리기준 단일화

**그** 동안 지정별로 다르게 운용됐던 항만 및 어항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점검사항이 올해부터 단일화되고 예비준공 검사 시기도 준공 2개월전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방향으로 항만 및 어항공사 품질관리규정 및 검사업무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요령의 점검개요, 품질보증계획 점검사항 규정 등 2개 항목 외에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이 신설된다.

신설 점검사항은 △관련자료의 구비 및 활용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품질시험, 검사요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확보 △품질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 빈도 실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기록유지 △품질시험 및 검사장비의 관리 여부 △부적합품 및 부적합 공정처리 등

의 적정성 등이다.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공사에 적용되는 품질시험계획 점검조항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업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각 지정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됐고 이에 따라 업체들은 지정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청, 부산청 주관의 올해 품질시험계획 점검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및 점검대상인 500억 이상 항만 및 어항공사에 대한 점검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공사완공 1개월전에 수행했던 예비준공검사 시기도 완공 2개월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검사시기 적정화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늘렸다.